

2021학년도 장애학생 지원 계획(안)

I 개요

-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와 유형별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 활동 및 이용 편의 지원
- 대면 및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의 불편사항 등 장애 요인을 해소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

II 현황

- 장애학생 현황

구분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계
인원(명)	2	6	8

※ 2021. 3. 22. 재학생 기준

III 장애학생 지원 관련 제도 및 규정

- 장애학생특별전형제도
 - 학생부 교과(특수교육대상자전형)
- 금오공과대학교 학칙
 - 제24조(재학연한)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수업 연한의 2배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
 - 제95조(장애학생 지원) ①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.

②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본교에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대학의 결정 등에 대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.

③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□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규정

○ 제28조(휴학기간) ④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휴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

□ 금오공과대학교 장애학생복지지원 규정: <붙임 1>

IV 장애학생 지원 계획

□ 학습 편의 지원

○ 장애 학생 우선 수강 신청 지원

- 일시: 2월, 8월

- 방법: 장애학생 → 장애학생지원센터 → 교무처로 신청

○ 학습 도우미 지원

- 일시: 상시 지원

- 방법: 장애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 시 맞춤형 도우미 지원

○ 수업 관련 지원

- 방법: 장애로 인한 불편 시 강의실 좌석 우선 배정, 시험시간 연장 등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적절한 맞춤형 지원

○ 비대면 강의 지원: 대체자료 지원, 학습도우미 지원, 텍스트 파일 제공 등

○ 학습보조기기 지원: 컴퓨터, 독서확대기, 헤드포인트스틱 제공 등

○ 학업결손 방지 프로그램 운영: 심리검사 및 맞춤형 상담 지원, 교내 상담센터 연계하여 상시 지원

○ 진로 및 취업 관련 지원: 교내 취업지원본부 연계하여 상시 지원

□ 이용 편의 지원

- 생활관 입사 시 장애학생 우선권 부여: 2월, 8월
- 장애학생 휴게실 운영: DB103호
-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: 도서관 장애인 전용석 배치
- 주차료 면제
- 학생식당 장애인석 마련
-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: 신청서 <붙임 2>
- 보유 기자재 현황

보유기자재	수량	구비장소
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	1	장애학생휴게실
탁상용 독서 확대기	1	
높낮이테이블	1	도서관
휠체어	1	장애학생지원센터
헤드포인터 스틱	1	
공공형 보청기(음성증폭기)	1	
노트북	1	
데스크탑노트북	1	장애학생휴게실

- 기타 시설 지원 및 편의 지원: 요청서 <붙임 3>

□ 대학생활 지원

- 소통 창구 운영: 개인면담, SNS 등 활용하여 연중 실시
- 장애학생 간담회 실시
 - 일시: 학기 초 2회(3월 ~ 10월)
 - 내용: 학교생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, 대학생활 안내 및 학습지원 방안 모색 등
-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
 - 일시: 축제기간 활용(5월, 10월)
 - 내용: 편견 없는 대학문화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에티켓 홍보 등

- 장애이해 특강 실시
 - 일시: 3~12월
 - 내용: 장애인권, 장애개념 및 차별개념 등 장애인에 대한 이해
- 장애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
 - 일시: 4월~12월
 - 내용: 장애학생 진로취업 프로그램,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
 - 방법: 대구·경북 대학 네트워크 사업으로 협력하여 진행
- 장애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선 마스크 지급 등

V

기대효과

-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 및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 보호 및 대학생활 만족도 제고
- 교육여건 및 편의시설 등 환경을 개선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

<붙임 1>

금오공과대학교 장애학생복지지원 규정

제정 2011. 11. 3. 규정 제580호

1차 개정 2018. 12. 21. 규정 제1072호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조직,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“장애학생”이라 함은 교수·학습활동 및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이 저하된 학생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학생을 말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“지원”이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금오공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수강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 2 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

제4조(기능)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학생 복지지원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
3.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
4.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
5. 그 밖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학생처장, 교무처장, 기획협력처장, 사무국장, 입학관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본교의 교원 및 장애학생 이해 당사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,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

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안전의 성질상 미리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장애학생지원센터

제7조(설치)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직무)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장애학생의 학습권보장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의 등록 및 현황 유지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
4. 교직원 및 도우미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5.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 및 개선
6. 장애학생을 위한 학내 지원제도 및 사업 안내
7. 기타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
제9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학생처장이 겸임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10조(상담원 등) 센터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각종 상담을 위하여 전문상담원 또는 상담교수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10조의2(교수·학습지원)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우선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
2. 도우미 배정
3. 교수·학습 기자재 대여
4.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의3(대학생활지원)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활관 등의 편의시설
2. 장애학생 상담
3. 진로상담,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
4. 그 밖에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

제 4 장 보 칙

- 제11조(심사청구 등)** ①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센터에 각종 지원 조치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(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)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심사청구[별지 제1호 서식]를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통지서[별지 제2호 서식]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⑥ 센터장과 교직원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(2011. 11. 3. 규정 제580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차 개정 2018. 12. 21. 규정 제1072호)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<붙임 2>

기자재 대여신청서

학과/학부		학년	
학번		성명	
휴대전화		E-mail	
대여신청기기			
사 용 목 적			
주 사용장소			
대 여 기 간	20 월 일 ~ 20 년 월 일		
	반납일시 20 . . : 확인자 (인)		

위와 같이 기자재의 대여를 신청합니다. 위에 기재한 목적에만 사용하겠으며 사용 중 파손 또는 분실할 경우 본인이 변상조치 하겠습니다.

※ 기자재 대여 등을 위한 개인신상정보제공 동의 여부(동의함 동의안함)

20 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금오공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귀하

<붙임 3>

시설지원요청서

요청자 인적사항			
학과/학부		학년	
학번		성명	
연락처	휴대전화		
	E-mail		
요청사항			
위치			
불편한 점			
요청사항			

20 년 월 일

신청인

(인)

금오공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귀하

편의지원요청서

요청자 인적사항			
학과/학부		학년	
학번		성명	
연락처	휴대전화		
	E-mail		
요청사항			
제목			
요청 상세사항			

20 년 월 일

신청인

(인)

금오공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귀하

처리결과	※ 센터에서 기재합니다.
------	---------------